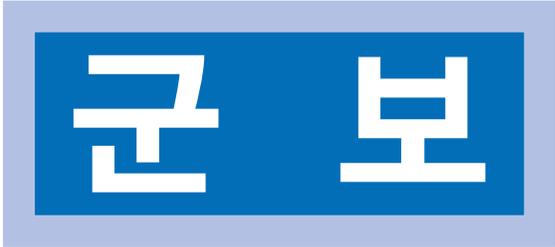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호 외 2017. 12. 29(금)

조 례

장수군 조례 제 2263호 -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장수군 조례 제 2264호 -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장수군 조례 제 2265호 -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장수군 조례 제 2266호 -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장수군 조례 제 2267호 -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장수군 조례 제 2268호 -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장수군 조례 제 2269호 -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장수군 조례 제 2270호 -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7
 장수군 조례 제 2271호 -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규 칙

장수군 규칙 제 1107호 -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33
 장수군 규칙 제 1108호 -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장수군 규칙 제 1109호 - 장수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장수군 규칙 제 1110호 - 장수군 상수도 원인가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4

훈 령

장수군 훈령 제 544호 - 장수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56
 장수군 훈령 제 545호 - 장수군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61
 장수군 훈령 제 546호 - 장수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64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17 - 132호 읍지곶밭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 69

공 고

장수군 공고 제 2017 - 995호 도로지정 변경 공고 70
 장수군 공고 제 2017 - 100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71

회 람									
--------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228)

장수군 조례 제 2263호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화장장소			사망일자		화장일시
	안치장소			(시설명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집 : HP:	
지급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p>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장수군수 귀하</p>						
<p>※ 구비서류</p> <p>1. 화장증명서 1부</p> <p>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p> <p>3. 통장사본 1부</p>						

1. 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및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삭제

장수군 조례 제 2264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 을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사사로운” 을 “사적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장” 을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기관의장” 을 “군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 을 “군수” 로 한다.

제11조 중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을 “경우 군수는”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을 “공무원증발급” 으로,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언지” 를 “받지” 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 을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 을 “군수는 소속공무원”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 을 “전염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의 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은 본인” 을 “군수는 소속공무원” 으로, “얻을 수 있다” 를 “주어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자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여자” 를 “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얻” 을 “받”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 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7항(중전의 제6항) 및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언”을 각각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받을수”를 “받을 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수는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제1호의 휴가일수를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2호의 휴가일수를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에 10일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15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20년 이상 : 20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제한(제7조의2)
- 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제8조제4항)
- 다.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은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에 따름(제12조제2항)
- 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제23조제5항)
- 마.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 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제23조제6항)
- 바.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사용 횟수를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변경(제23조제11항)

장수군 조례 제 2265호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으로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를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정이유

- ◎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대한 「장수군 군세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제3조)

장수군 조례 제 2266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시” 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으로,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라 함) 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100으로” 를 “50으로” 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정이유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감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제2조)
 -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시 대체취득으로 요건을 강화
- 나.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관련법 수정(제5조)
- 다.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제6조의2)
- 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축소 (제8조)
- 마. 문화재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제4조, 제7조, 제9조)

장수군 조례 제 2267호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조례 제11조(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삭제
 - 가. 현행 조례 제11조제1호 “편의위생용품(화장지 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 삭제
 - 나. 현행 조례 제11조제5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삭제

장수군 조례 제 2268호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구단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일(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를 더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목의 비율까지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경사도는 25도” 를 “경사도는 20도”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5도 이상인 토지” 를 “20도 이상인 토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토지” 를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50m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임야는 제외)” 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연취락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거나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제20조제1항제3호나목(중전의 다목) 중 “토지이용(개간)” 을 “농업용시설(농가주택포함)” 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말한다” 를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 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을 따른다.

제4장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

가. 주거지역 : 0.1

나. 상업지역 : 0.1

다. 공업지역 : 0.1

라. 녹지지역 : 0.2

2. 도시외지역 : 0.2

제30조의3(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설치) ① 법 제70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심의” 를 “심의 및 자문” 으로 한다.

별표 3에 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4 제목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로 한다.

별표 4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5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조의 야영장시설

별표 7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2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조의 야영장시설

별표 18 나목 중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 을 “나목” 으로 하고, 같은 표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조의 야영장시설

별표 20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조의 야영장시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임야는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4]

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제20조제1항제3호 관련)

읍면별	지역지구명	표고(m)	비 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표고)
장수읍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100m	415미터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 지역 외 비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150m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200m	
산서면	전지역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150m	150미터
변암면	지지리, 사암리, 교동리, 동화리 외 전지역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150m	248미터
	지지리, 사암리, 교동리, 동화리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200m	
장계면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100m	357미터
	비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200m	
천천면	전지역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150m	343미터
계남면	전지역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150m	374미터
계북면	전지역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150m	473미터

1. 개정이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함.
- ◎ 또한,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제16조)
- 나.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규정(제30조)
- 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도시지역, 도시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제31조의 2)
- 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31조의 3)
- 마.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별표 4)
- 바.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목을 삭제(별표 7)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야영장 시설을 신설(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12, 별표 18, 별표 20)
- 아.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평균경사도는 20도미만으로 하고, 표고에 관한 별표 24를 개정(제20조)

장수군 조례 제 2269호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를 “읍·면 대
표의 과반수” 로 한다.

제4조제6항 본문 중 “대표” 를 “읍·면 대표” 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연재난” 을 각각 “재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감염병(인간)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제7조제4항 중 “세분화 할 수 있다.” 를 “별표와 같이 한다.” 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6항 중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 를 “위성 전화기”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자연재난업무” 를 “재난업무”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받아야 한다.” 를 “받을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수하여야 한다.” 를 “이수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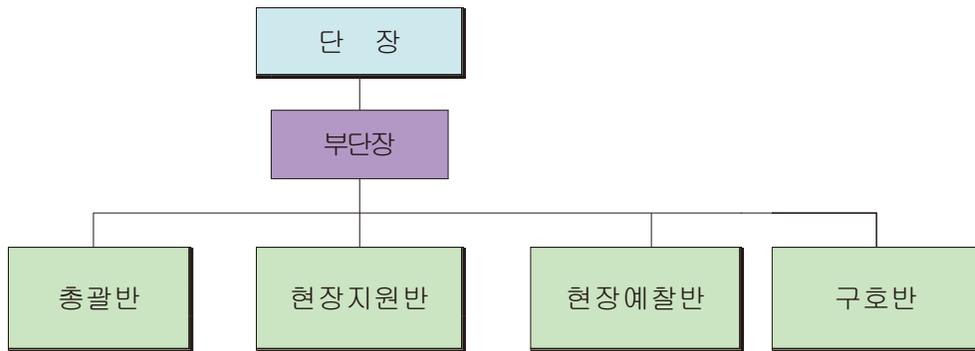
제15조(감독) 군수는 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한 자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구 성	임 무
총괄반	읍면 대표 및 총무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재단 총괄 조정 - 방재단 활동방향 검토·조정 - 자율방재단 현황관리 및 활동 계획 수립 - 재난지역 지원대책 논의
현장 지원반	지역자율방재단원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차량 등 통제 보조 - 주민, 야영객, 차량, 가축 등 대피 유도 - 현장 인력·장비·자재 파악 및 요청
현장 예찰반	지역자율방재단원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 홍보 및 경보 전달 - 강수·강설량 파악 현장 상황 파악·보고 - 취약지역 예찰·점검 실시, 결과보고 - 안내간판 등 점검·정비 - 기상 특보 시 비상 근무
구호반	지역자율방재단원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발생 현황 조사 -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 재해구호 물자 전달

1. 개정이유

-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근거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재 상황에 적합하도록 단장 선출 방법 변경(제3조제2항)
 - 읍·면 대표의 과반수 찬성
- 나. 현재 상황과 실익에 맞게 명칭 변경 및 정비(제4조제6항, 제7조제8호, 제7조제4항, 제9조제6항, 제15조)
- 다. 임무를 사회재난까지 포함하여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변경
- 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제8조제3항)
- 마. 상위법령에 맞게 규제 완화(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2항)

장수군 조례 제2270호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
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제2조)
-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제3조)
-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제4조)
- 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제6조)
- 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 등(제8조)

장수군 조례 제 2271호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장수군 문화예술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 변경과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사항 및 주관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조항 변경(제1조)

- 당초 : 지방자치법 제135조 → 변경 :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문화예술촌 위탁운영의 취소·해제 시 불합리한 규제 규정 조문 삭제(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장수군 규칙 제 1107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 급 \ 기 관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 건 의료원	농업 기술 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493	248	14	65	31	32	103(1)
정무직계		1	1					
정무	군 수	1	1					
별정직계		1	1					
6급	비 서	1	1					
일반직계		460	245	14	65	2	31	103
4급	소 계	2	1		1			
	행 정	1	1					
	의 무	1			1			
4·5급	소 계	2	2					
	행 정	1	1					
	행정·사회복 지	1	1					
5급	소 계	21	9	2	2		1	7
	행 정	3	2	1				
	시 설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복지	1	1					
	행정·시설	3	2				1	
	행정·환경·시 설	1	1					
	행정·농업·수 의	1	1					
	행·농·시·사	2						2
	행·농·사·지 도	1						1
	행·농·사·환	1						1
	행·농·시·보	1						1
	행·농·복·시	1						1
	행·농·복·간	1						1
	행·보·간·의	1				1		
의무·보·간· 의	1				1			
6급	소 계	102	60	2	9	0	7	24
	행 정	15	11	1			3	
	농업	1	1					
	복 지	2	2					

	시 설	5	5				
	간 호	1			1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 지	6	5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10	7	1			2
	행정·복지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6	5			1	
	농업·수의	1	1				
	환경·공업	1				1	
	환경·보건	1				1	
	환경·시설	1	1				
	보건·환경	2	2				
	시설·복지	1	1				
	행정·세무·시 설	3	2				1
	행정·사회복 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 지·간호	1					1
	행정·전산·방 송통신	2	1				1
	행정·농업·세 무	5					5
	행정·농업·사 회복지	4					4
	행정·농업·복 지	4					4
	행정·농업·환 경	1					1
	행정·농업·시 설	2	1				1
	행정·보건·세 무	1					1
	행정·보건·간 호·의료기술	1			1		
	행정·전산·농 업·복지	1					1
	보건·간호·의 료기술	4			4		
	행정·사무운 영	1	1				
	운전	2	2				
	사무·전기·기 계	2	1			1	
7급	소 계	148	79	5	24	10	30
	행 정	22	16	2		3	1

세 무	3	3					
사회복지	4	2					2
공업	2	1				1	
농 업	5	5					
녹 지	3	3					
보건	2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보건진료	3			3			
환 경	1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6	3					3
행정·사회복 지	7	2					5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6	5	1				10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보건	2			2			
전산·방송통 신	2	2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5			5			
환경·공업	1					1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수 의	2	2					
행정·농업·녹 지	3					1	2
행정·농업·환 경	4	1					3
행정·농업·시 설	1			1			
보건·간호·의 료기술	3			3			
사무운영	7	2	2			1	2
행정·운전·시 설관리	1	1					
열관리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전	7	3		3			1
열관리·전기운영	0						

8급	소 계	126	61	5	25	1	9	25
	행 정	20	16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3	3					
	공 업	1				1		
	농 업	4	4					
	녹 지	2	2					
	보 건	4			4			
	의료기술	5			5			
	간 호	5			5			
	보건진료	5			5			
	환 경	3	1				2	
	시 설	8	6				2	
	행정·세무	5	1					4
	행정·사회복지	8	2					6
	행정·전산	4	3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6	4					2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3	1					2
	행정·시설	14	7					7
	행정·방재안전	2	2					
	전산·방송통신	1		1				
	보건·간호	0						
	보건·환경	1	1					
	행정·농업·보건	0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사무운영	0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운전	6	2	2	1		1		
열관리·전기운영	1					1		
9급	소 계	58	33		4		4	17(1)
	행 정	11	4				2	5(1)
	세 무	2	2					
	사회복지	4	4					
	녹 지	1	1					

	보 건	4	1		3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 지	10	3					7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6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0	10					
	행정·환경·녹 지	1	1					
	보건·의기	1			1			
	운전	1	1					
	기계운영	1					1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농기계교관	1				1		
지도직계		26				26		
지도관	농촌지도	3				3		
지도사	농촌지도	23				23		
연구직계		5	1			3	1	
연구사	기록연구	1	1					
	농업연구	3				3		
	학예연구	1					1	

1. 제정이유

- ◎ 「행정안전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478명 ⇨ 493명(+15)

나. 기능 및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에 대한 정원 조정

- 7급 : 147명 ⇒ 148명 (+ 1명)
- 8급 : 125명 ⇒ 126명 (+ 1명)
- 9급 : 46명 ⇒ 58명 (+ 12명)
- 연구직 : 4명 ⇒ 5명 (+ 1명)

장수군 규칙 제 110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지원과의 나누어 맡는 사무란에 “49.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50. 저출산·인구감소 지역맞춤형 대응시책 발굴·추진 51. 인구 늘리기 업무 총괄 추진” 을 신설하고, 농업정책과의 나누어 맡는 사무란 중 “9. 향토산업·농촌체험·생생 마을 조성 및 관리” 를 “9. 향토산업·농촌체험 마을 조성 및 관리” 로 하며, 건설경제과의 나누어 맡는 사무란에 “3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33. 생생마을 마을 조성 및 관리 34. 중간지원조직 관리” 를 신설하고, 안전재난과의 나누어 맡는 사무란에 “4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6.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조례 및 규정 총괄 47.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8. 장수군 CCTV 총괄 관리 49. 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50. 영상 정보 제공 및 열람 관련 민원처리 51. 관제요원 채용 및 관리 감독” 을 신설 한다.

별표 2 보건의료원에서 나누어 맡는 사무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문화체육관광사업소의 나누어 맡는 사무란에 “14. 가야문화유적 업무 15. 국가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실·과별 나누어 맡는 사무표(제4조 관련)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행정 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2.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 조직관리 3. 정·현원 관리등 인력관리 4. 조직진단 및 인사기록관리에 관한사항 5.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6. 선거, 국민투표, 읍면 리하부조직 관리 7. 시장·군수 협의회, 기관단체장 상조회 8.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직원 인력동원 9.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10. 지방분권 업무 11. 애향교육진흥 및 평생학습관 운영 12. 본청 공무원, 청경 복무관리 단속 및 당직관리 13. 공무원 교육훈련, 상훈, 보안, 복무단속 14. 문서서관 및 기록물 관리, 제안제도 15. 적십자 회비, 직원후생복지 전반 16. 공인관리 및 문서수발 17. 행정서비스 현장 18.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19. 과거사 진상조사 20. 국가기반체계 업무 21. 신규업무 및 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조정역할 22.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23.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24. 제4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25.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26.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27.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28.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현장) 제정 운영 29.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30.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31.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정보화 시스템 도입 32.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33. 전자문서유통 및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34. 대표홈페이지 및 동영상 시스템 운영 3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행정 지원과	36. 새울행정시스템 및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운영 37. 컴퓨터보급 및 업무용 S/W 보급 관리 38.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39.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관리 40. 부서별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및 지원 41. 정보화 교육장 및 영상회의실 운영 42. 전산 및 통신 일반사항 43.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44. 전용회선(데이터 및 행정전화) 운영관리 45. 행정종합정보통신망 및 IP관리 46. 행정전화 및 정보통신회선 운영 관리 4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설계검토 48. 교환 및 팩스시설 운영 관리 49.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50. 저출산·인구감소 지역맞춤형 대응시책 발굴·추진 51. 인구늘리기 업무 총괄 추진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농업 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정책 추진 총괄 관리 2. 농촌사업(소득금고, 경영희생) 지원 및 관리 3. 농지의 이용 및 관리 업무 4.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업무 5. 농업인 안전 보험 및 농작물 재해 보험 업무 6.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 7.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농업기술센터 업무 제외) 8. 농업 6차 산업화 9. 향토산업·농촌체험 마을 조성 및 관리 10.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11.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 12. 농촌 테마공원 운영 관리 13. 귀농 업무 14. 도·농교류 업무 15. 농촌관광 농원·민박 지정 관리 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대책 17. 양정 업무 18. 비료 및 농약 관리 19. 농업관련 직불제 사업 20. 농업재해 대책 (과수제외) 21. 일반 원예시설 지원 22. 지역특화 사업 지원 23.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24. 전작, 특작지원 사업 25. 농업의 FTA 사업 총괄 26. 농·특산물 유통지원 총괄 27. 거점 산지 유통센터 지원 28.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29. 농·특산물 국내·외 판매 촉진 지원 30.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및 홍보 31.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 32.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33.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34.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추진 및 지원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건설 경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2. 옥외광고물 관리 및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3. 도로정비 및 도로굴착업무 전반 4. 국유재산 관리 5. 지방도 보상추진 및 민원관리 6.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업무 전반 7. 관광순환도로개설사업 추진 8. 개발촉진지구등 지역개발 업무전반 9.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10. 개발행위허가·협의 11.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12. 도로망 건설 종합계획 13.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개보수 사업 14.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공사 협의 15.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지도감독 16. 소규모 지역개발 업무관리 전반 17. 소규모사업 자체 측량 및 설계 18.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19. 받기반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20. 오지개발사업 계획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21. 수리시설, 지하수 개발사업 22. 한해대책 및 양수장비 관리 23. 농촌가로등 설치, 관리 24. 농공단지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25.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장수사랑 상품권 발행 등) 26. 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농공단지 분양 및 사후관리 27. 물가종합대책 추진 28. 재래시장 관리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29. 노정업무,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민생안정 전반 30.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 31.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취소 및 정관변경, 합병, 분할승인 3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33. 생생마을 조성 및 관리 34. 중간지원조직 관리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안 전 재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정책 총괄·조정 2. 민방위 계획수립 및 민방위대 편성운영 3. 민방위 교육·훈련 4. 민방위 시설보호 및 장비유지관리 5. 민방공 사이렌 장비 운영 관리 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7. 주민신고망 관리 8.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9. 비상대비업무 10. 지역자율 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11. 인명피해최소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12. 국가재난대응훈련 실시 13. 자연재난 대비 교육(방재교육) 14. 민간 모니터위원관리 운영 15. 응급 복구용 장비 지원 협약 16. 소방업무 17. 의용소방대 지원 18.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작성·관리 19.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20.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1.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22.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보수·정비 23. 재해피해상황 보고, 분석 및 복구계획 수립 24. 수해복구사업, 수방자재 비축관리 25. 재난 예, 경보 시설 관리 26.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대비 응급대응체제 구축 27. 재난대비 물자장비 관리 동원계획 수립 28. 자연재해경감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29.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추진 30. 지진피해 경감대책수립·추진 31. 소하천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32.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수립·추진 33. 에너지 관리, 석유가스 판매업소 사용시설 관리 34.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관리자문단운영 35. 안전점검의날 및 안전문화운동 운영 36.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3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추진

실·과	나 누 어 말 는 사 무
안 전 재난과	38.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 및 지원체제 구축 39.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조사점검 40.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지방2급하천 공사 지도감독 41. 지방2급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골재채취허가 42. 지방 2급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기성제 정비 43. 생활민원 처리 44. 주민생활안전, 자위방법 CCTV 관리 4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6.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조례 및 규정 총괄 47.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8. 장수군 CCTV 총괄 관리 49. 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50. 영상정보 제공 및 열람 관련 민원처리 51. 관제요원 채용 및 관리 감독

[별표 2]

보건의료원에서 나누어 맡는 사무표(제8조 관련)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보 건 사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 3. 시설 및 공유재산 4.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5. 공중보건의 관리 6. 장례식장 운영 7. 과 서무, 과 회계 8. 통합건강증진 총괄 9.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10. 건강생활실천(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11. 영양플러스사업 12. 방문건강 관리사업 13. 재활사업 14. 의료비지원사업(암, 희귀난치) 15.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16.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17. 경로당 노인 건강교실운영 18. 재가암 관리 19.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20. 사회복귀시설운영 21. 구강보건 22. 이동목욕 23. 지역사회건강조사 24. 방역소독업 허가 및 관리 25. 의무소독 시설관리 26. 만성감염병 관리(결핵, 성병, 에이즈) 27. 법정 및 지정 감염병 관리 28. 방역대책 및 소관업무관리 29. 식중독 관리 30. 기생 및 감염충 관리 31.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관리 32. 예방접종 사업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의 료 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보고 및 사업계획 추진 2. 치과 운영 3. 민원실·의무기록실 운영 4. 물리치료실 운영 5. 건강검진실 운영 6. 과 서무, 과 회계 7. 내과(1&2), 정형,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의과 운영 8. 응급실, 입원실, 방사선실운영 9. 주사실(투약) 10. 의약품 및 소모품관리 11. 의료폐기물 관리 12. 병원 세탁물 관리 13. 출산장려금 지원 14. 모자보건사업(임산부 건강관리·출산용품 지원, 여성어린이 지원)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청 지원 16. 고위험·청소년 임산부 지원 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19.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20. 의·약무 관리(마약류, 지도점검, 건강검진 신고) 21. 국가암검진 사업 22. 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 영유아,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23. 아토피 사업 24. 기타 검진사업 전반(노인성질환자, 무료안검진, 심장병무료검진)

[별표 4]

사업소에서 나누어 맡는 사무표(제13조 관련)

실·과	나 누 어 맡 는 사 무
문화 체육 관광 사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 관련 기획 및 축제일반 2. 전통사찰, 매장문화재등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사항 3. 문화재 관리 및 지정 4. 향토사 연구 및 유적지 관리 5. 종교단체, 예술촌 관리 6. 각종 체육행사 기획, 생활체육교실 운영 7. 골프장 건설 8.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9. 스포츠레저 업무 10. 문화시설(문화체육관, 각종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11.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 12. 관광관련 기획 및 관광개발 사업 추진 13. 장수관광 업무 14. 가야문화유적 업무 15. 국가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1. 개정이유

- ◎ 「행정안전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구정책팀 신설에 따른 업무신설(행정지원과)
- 나. 마을공동체팀 신설에 따른 업무신설 및 이관(건설경제과)
- 다. 가야문화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업무 신설(문화체육관광사업소)
- 라.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통합설치에 의한 업무조정(안전재난과)
- 마. 감염병전담팀 신설에 따른 보건의료원 업무조정(보건의료원)

장수군 규칙 제1109호

장수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장수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분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처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제6조)
- 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제8조)
- 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제10조)

장수군 규칙 제 1110호

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회” 를 “4회”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 횟수를 늘림으로써 민원인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횟수 3회를 4회로 변경하여 부담을 완화 (제2조)

장수군 훈령 제 544호

장수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배정표(제2조제1항관련)

직 급	기 관	총 계	기 획 조 정 실	주 민 복 지 실	행 정 지 원 과	재 무 과	민 원 과	환 경 위 생 과	농 업 정 책 과	축 산 과	산 림 녹 지 과	건 설 경 제 과	안 전 재 난 과
총 계		248	20	24	29	28	23	25	23	13	17	28	18
정무직계		1			1								
정무	군 수	1			1								
별정직계		1			1								
6급	비 서	1			1								
일반직계		240	20	24	25	28	22	25	23	12	17	26	18
4급	소 계	1			1								
	행 정	1			1								
4·5급	소 계	2	1	1									
	행 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5급	소 계	9			1	1	1	1	1	1	1	1	1
	행 정	2			1	1							
	시 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수의	1								1			
6급	소 계	60	5	6	5	8	5	6	6	3	5	5	6
	행 정	11	5		3		1					1	1
	농 업	1							1				
	녹 지	2									2		
	시 설	5				1	2					1	1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7			1				5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5							1			3	1
	농업·수의	1								1			
	환경·시설	1							1				
	보건·환경	2							2				
시설·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무운영	1										1	
	사무·전기·기계	1										1	
	운전	2				2							
7급	소 계	79	7	5	11	10	9	7	8	4	4	10	4
	행 정	16	3	2	5	1	1		1			2	1
	세 무	3				3							
	사회복지	2		2									
	공업	1											1
	농업	5							4	1			
	녹지	3									3		
	보건	1						1					
	환경	1						1					
	시설	14	1			1	5	1				4	2
	행정·세무	3	1			2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1						3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					2					1	
	전산·방송통신	2			2								
	농업·수의	1								1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환경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운전·시설관리	1			1								
	열관리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운 전	3				1		1					1	

8급	소 계	61	6	6	6	5	4	6	5	4	6	7	6
	행 정	16	3	1	5	1	2					3	1
	세 무	1				1							
	사회복지	3		3									
	농 업	4							2	2			
	녹 지	2									2		
	환 경	1						1					
	시 설	6				1		1			1	2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3	1		1		1						
	행정·공업												
	행정·농업	4	1						2	1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1			1	1		1	1		1	1
	행정·방재안전	2											2
	보건·환경	1							1				
	행정·농업·보건	0	0										
	전기운영	0											
기계운영	2							1				1	
운 전	2							1			1		
9급	소 계	33	1	6	2	4	4	5	3	1	1	5	1
	행 정	4	1		2							1	
	세 무	2				2							
	사회복지	4		4			0						
	녹 지	1									1		
	보 건	1						1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농업	3							2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0					3	2	1			3	1
행정·환경·녹지	1						1						
운 전	1				0						1		
	33												
연구직계	1			1									
연구사	기록	1			1								

[별표 2]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배정표(제2조제2항관련)

직 급	기 관	총계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계	보건사업과		의료 지원과	소계	농촌 지원과	과수특작 연구과
				본소	지소				
총계		96	65	23	21	21	31	18	13
일반직계		66	65	23	21	21	1		
4급	소 계	1	1	1					
	의 무	1	1	1					
5급	소 계	2	2	1		1			
	행·보·간·의	1	1	1					
	의무·보·간·의	1	1			1			
6급	소 계	9	9	4	3	2			
	간 호	1	1			1			
	보건진료	3	3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3	3		1			
7급	소 계	24	24	12	8	4			
	보건	1	1	1	0				
	의료기술	1	1		1				
	간 호	4	4	1		3			
	보건진료	3	3		3				
	행정·보건	2	2	2					
	보건·간호	5	5	1	4				
	행정·농업·시설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2		1			
	열관리운영	1	1	1					
8급	소 계	26	25	5	9	11	1	1	
	공 업	1					1	1	
	보 건	4	4	3	1				
	의료기술	5	5		1	4			
	간 호	5	5			5			
	보건진료	5	5		5				
	보건·간호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1	2	2			
	운전	1	1	1					

장수군 훈령 제 545호

장수군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제개혁팀” 을 “규제개혁팀, 인구정책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무후생, 평생교육, 규제개혁팀장” 을 “서무후생,
평생교육, 규제개혁, 인구정책팀장”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촌시설팀” 을 “농촌시설팀, 마을공동체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행정, 도시, 농촌시설팀장” 을 “건설행정
, 도시, 농촌시설, 마을공동체팀장”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예방팀,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 건강센터팀” 을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센터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보건예방, 방문보건, 건강증진, 건강센터팀장” 을 “방문보건,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건강센터팀장”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진료팀” 을 “진료팀, 보건의약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무팀장” 을 “원무, 보건의약팀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2017년 기준 인건비 반영인력」 전담팀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팀 신설(행정지원과)

나. 마을공동체팀 신설(건설경제과)

다. 감염병전담팀 신설에 따른 보건의료원 기구조정

－ 보건예방팀 분리 : 감염병관리팀(보건사업과), 보건약팀(의료지원과)

장수군 훈령 제 546호

장수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7년 12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가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이후부터 적용하되, 특정업무 근무경력은 근무성적평정당시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부터 적용하고,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그 직위에 발령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사로운” 을 “사적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장” 을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기관의장” 을 “군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 을 “군수” 로 한다.

제11조 중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을 “경우 군수는”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을 “공무원증발급” 으로,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언지” 를 “받지” 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 을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 을 “군수는 소속공무원”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 을 “전염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의 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은 본인” 을 “군수는 소속공무원” 으로, “얻을 수 있다” 를 “주어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자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여자” 를 “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얻” 을 “받”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 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제5조 제3항관련)

감 점 사 유		감 점 기 준	비 고
징계처분	중 징 계	1건당 2.0점	
	경 징 계	1건당 1.0점	
직위해제		1회당 1.0점	
경고(훈계)		1회당 0.3점	
대민불친절로인한 경고 등	경고(훈계)	1회당 1.0점	
	주 의	1회당 0.5점	
복무상태	무단결근	1일당 1.0점	
	무단이석·외출	1회당 0.5점	
	지각 및 무단조퇴	1회당 0.1점	

- ※ 동일 사안으로 이종의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점수로 감점처리
- 직위해제후 같은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
- ※ 단, 지각은 전자시스템상 결재를 득한 경우는 제외함

[별표 5]

실적가점 기준(제11조 관련)

실적가점부여요건	가점기준
1. 직무와 관련하여 창안상을 수상한 자 가. 대통령 이상 나. 국무총리 다. 장 관 라. 도 지 사 마. 군 수 : 자체 제안채택은 동상이상만 인정	1.0 0.8 0.6 0.4 0.2
2. 예산절감에 기여(제도 및 기술개선에 의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여야 함) 가. 1억원 이상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0 0.5 0.3 0.2 0.1
3. 삭제	
4.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전국(중앙) 단위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서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해당업무에 1년이상 근무하고 기관표창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팀장 및 담당자 각 1명에 한함	1.0 0.5 0.2
5. 출산친화정책<신설> 가. 넷째자녀 이상 출산 나. 셋째자녀 출산 - 2017.7.1. 이후 출산(입양포함)에 의해 3자녀 이상인 공무원(부부공무원 각각 부여) - 출생일이 속한 당해 직급에 한하여 적용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일)	1.0 0.5
6. 특정업무 근무경력<신설> 가.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자 나. 특정업무(기피부서)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자 - 해당 직위에서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월 0.05점, 최대 15개월(0.75점) ※ 재난안전 업무관련 팀 : 재난안전팀, 재해대책팀 특정업무(기피부서) 관련 부서 : 환경자원사업소	0.75

1. 개정이유

- ◎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을 명확히 하고, 실적가점기준에 재해대책팀을 추가하여 재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명확화

- (개정전) 복무상태 : 지각 및 조퇴 ⇒ (개정후) 지각 및 무단조퇴
- ※ 단, 지각은 전자시스템상 결재를 득한 경우는 제외

나. 실적가점 기준 변경

- 재난안전 업무관련팀에 재해대책팀을 추가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형평성 도모

장수군 고시 제 2017-132호

음지곶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음지곶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음지곶밭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3. 총사업비 : 1,865백만원(국비 1,400백만원, 지방비465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진입부 안전공간 조성, 유실사면 위험요소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철거 19동, 정비 5동)
 - 주택정비 : 주택철거(38동), 지붕개량(37동), 집수리(11동)
 - 공공이용시설
경로당 리모델링 및 공동주차장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리모델링 1식)
 - 마을환경개선 : 노후담장 개량 및 철거(1,779m), 혐오시설 정비(10동)
 - 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5. 시 행 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6. 시행기간 : 2016. 06. ~ 2018. 12.

장수군공고 제 2017 - 995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지정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7년 12월 15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m ²)		이해관계인	비고
전	후			전	후		
용광리 41	용광리 40-1	433.80m	8.00m	258	258	송점이 전병선 전해상 전병기	면적증가, 지번변경
용광리 41-3	용광리 41-3			211	211		면적증가, 지번변경
용광리 40-3	용광리 40-3			46	46		지번변경
용광리 산22	용광리 산22			923	873		면적증가
용광리 산 24-1	용광리 산 24-1			405	478		면적변경
용광리 71-2	용광리 71			598	549		면적증가, 지번변경
용광리 산 19	용광리 산 19			854	1,141		면적변경
용광리 산 19-2	용광리 산 19-2			159	159		

2017년 12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고 제 2017 - 100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및 해제 예정지 현황

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지정 목적 달성

위 치			지적 (㎡)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정 년월일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종류	
합 계		5필	65,126	65,126	65,126		
장수	두산	산37-1	18,339	18,339	18,339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장수	두산	산37-5	5,378	5,378	5,378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장수	두산	산73	12,711	12,711	12,711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장수	두산	산73-7	20,894	20,894	20,894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장수	두산	산73-8	7,804	7,804	7,804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2.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관보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일 이내에 붙임과 같이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장수군청 산림녹지과(063-350-2424)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산림녹지과
- 팩스 : 063. 350. 2417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조서 1부

2.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2017년 12월 20일

장 수 군 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필지별 내역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일자	지정 목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계			5필지	65,126	65,126	65,126				
장수	장수	두산	산37-1	18,339	18,339	18,339	1986.09.22	수원함양보호구역	허찬웅	<small>장수군 장수읍 백장동 1859-115</small>
장수	장수	두산	산37-5	5,378	5,378	5,378	1986.09.22	수원함양보호구역	한국농어촌공사	
장수	장수	두산	산73	12,711	12,711	12,711	1986.09.22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청	
장수	장수	두산	산73-7	20,894	20,894	20,894	1986.09.22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청	
장수	장수	두산	산73-8	7,804	7,804	7,804	1986.09.22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청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m ²
[]지정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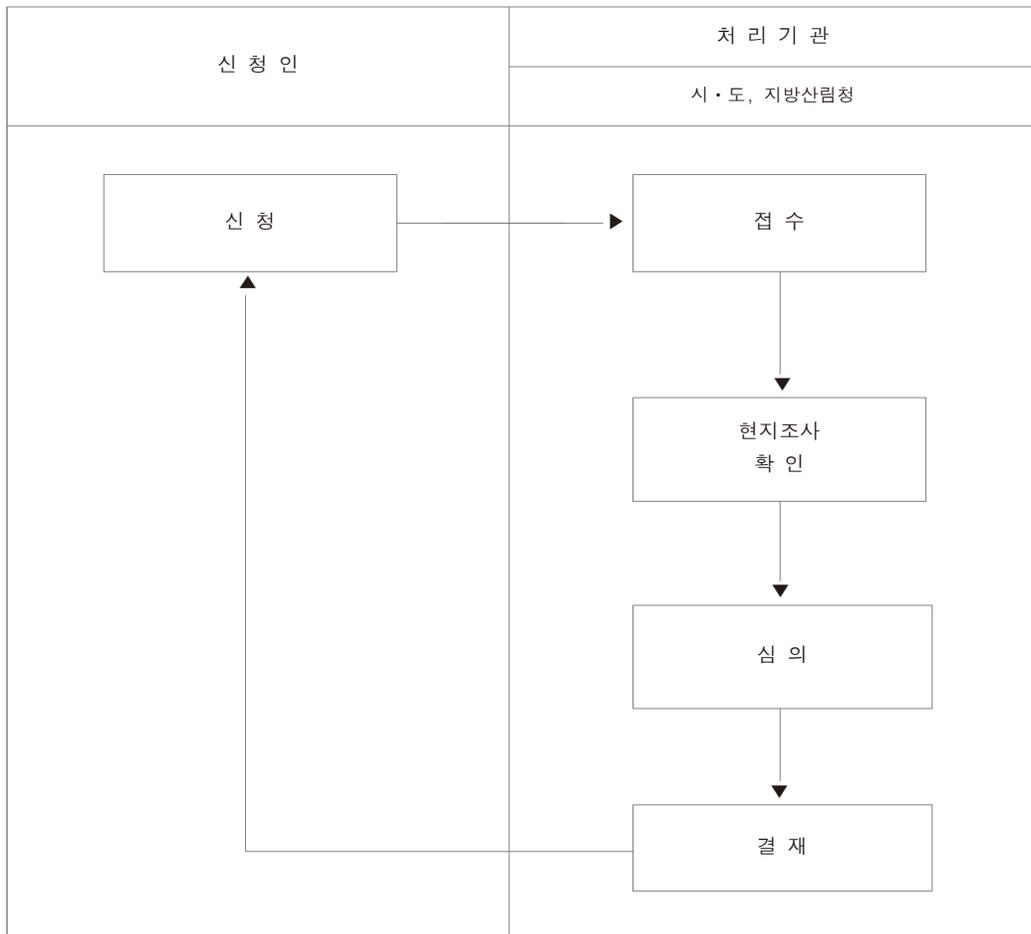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군보발행안내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